

세계 유기식품 산업 현황과 국내 유기식품 수출확대 방안

1. 유기식품 개요	3
2. 국내 유기식품 현황	9
3. 해외 유기식품 현황	18
4. 유기인증식품 해외진출 과정 및 애로사항	23
5. 유기인증식품 수출확대 방안	24

< 부록 >

1 일본 유기 인증제도	31
2 미국 유기 인증제도	32
3 IFOAM 국제인증제도	33
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기인증 관련 지원사업	35

요 약

- 인류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욕구가 증대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몸에 좋고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지속되어 유기농식품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세계 식품시장은 인공적, 화학적,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원료로 한 제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연적, 생물학적, 생태계 건강을 촉진하는 유기농식품의 생산이 증대 추세임
 - 총농지면적 가운데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약 1% 내외 수준임
- 데이터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세계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약 593억불로 전년대비 12.4% 성장했으며, '15년에는 '10년 대비 약 48.4% 증가한 881억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전세계 유기식품시장은 유럽(독일, 영국), 북미, 호주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09년 세계 유기식품 총수익의 49%를 차지)
- 국내 유기식품 동향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으로 대별하여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과 선호도가 증대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3)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 축산물 인증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원료 95%이상 사용
- 이번 aT포커스에는 유기농식품 소비시장은 주로 선진국인데 세계 유기식품과 국내 유기식품 현황을 동시에 파악하여 국제유기식품 시장에서 우리 유기식품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공적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세계 유기식품 산업 현황과 국내 유기식품 수출확대 방안

최근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국내외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사는 소비’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유기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외 유기식품 시장, 인증제도 등을 검토·비교함으로써 국제유기식품 시장에서 우리 유기식품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공적인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함

1 유기식품 개요

■ 유기식품

-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합하여 ‘유기식품’이라 함
 - 라벨에 ‘Organic’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과 균형을 이루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과 물질을 사용한 농업절차를 준수한다는 약속의 의미
-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농·림·축·수산물
-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식품
 - 유기가공식품은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완제품에 해당하는 ‘수입 유기가공 식품’으로 구분됨

■ 유기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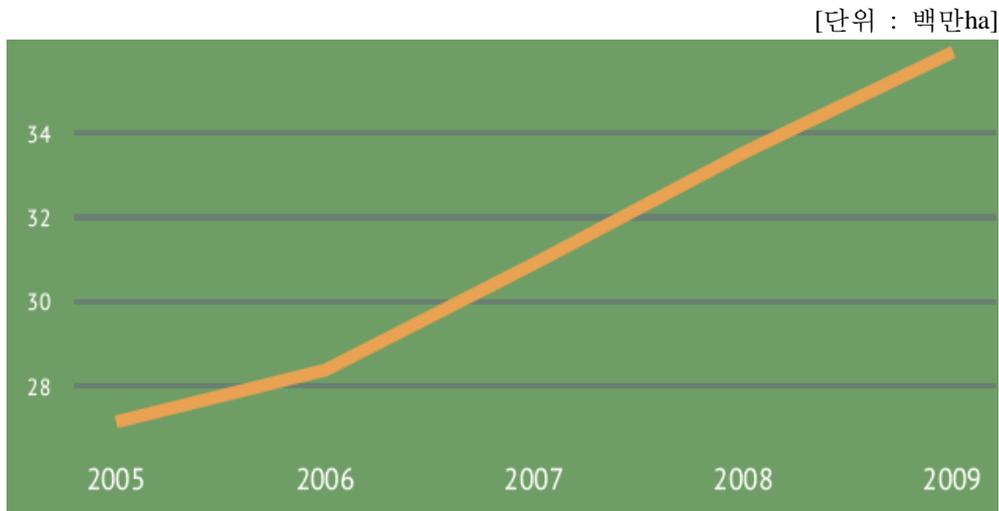
- FAO의 정의에 따르면, 유기농업은 생물학적 주기 및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포함한 생태계의 건강을 촉진 및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생산 관리시스템임

- 유기농업은 대개 검사·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시행되는 일련의 규칙 및 제한으로 구성된 토지, 작물, 가축에 대한 다양한 관리절차들로 구성됨
- 합성 농약, 광물성 비료, 합성 보존제, 의약품, 유전자변형농산물(GMOs), 하수 침전물 찌꺼기 및 방사선 조사는 모든 유기농 인증 기준에서 금지되어 있음
-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및 요건들은 '99년에 채택된 국제식품규격지침에 정의되어 있으며, '01년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었음

■ 유기농업 비중

- '95년부터 '10년까지 서유럽, 중남미 및 카리브해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3배 증가한 3,800만ha에 이르렀음
 - '04년부터 '09년까지 세계 유기농업 재배면적은 30%까지 증가했음

2004~09 세계 유기농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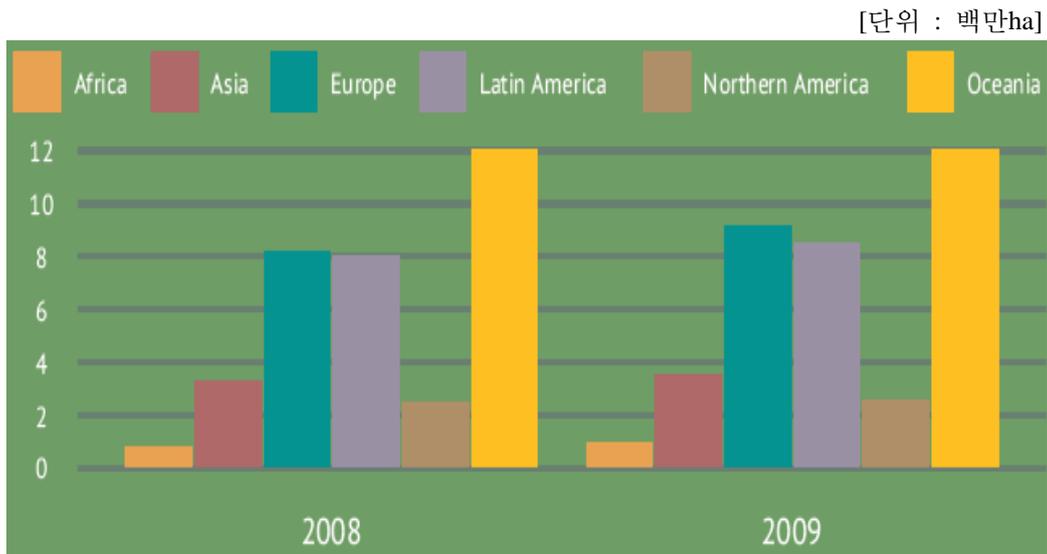


자료 : FAO-FiBL-IFOAM

- 총 농지면적 중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유럽의 유기농업 면적 비율은 한자리수로 증가했지만, 타 지역의 경우 1%p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임

- '09년 유럽의 유기농업 면적은 1백만ha 증가함
- '08년부터 '09년까지 세계의 지역별 유기농업 면적은 오세아니아의 유기농업 비율이 가장 높음

2008~09 세계 지역별 유기농업 면적



자료 : FAO-FIBL-IFOAM

▣ 해외 유기식품 동향

- 데이터모니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세계유기식품시장 규모는 약 59,341 백만불로 전년대비 12.4% 성장했으며, '15년에는 '10년 대비 약 48.4% 증가한 88,069.3백만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유기식품시장은 유럽(독일, 영국), 북미, 호주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음('09년 기준 세계 유기식품 총수익의 49%를 차지)
- 유기식품 수요는 유럽, 미주 등 서구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음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

[단위 : 억불]



기준연도	2000	2003	2006	2009	2010	2015
시장규모	179	255	402	549	593	881

자료 : 농협중앙회

국내 유기식품 동향

●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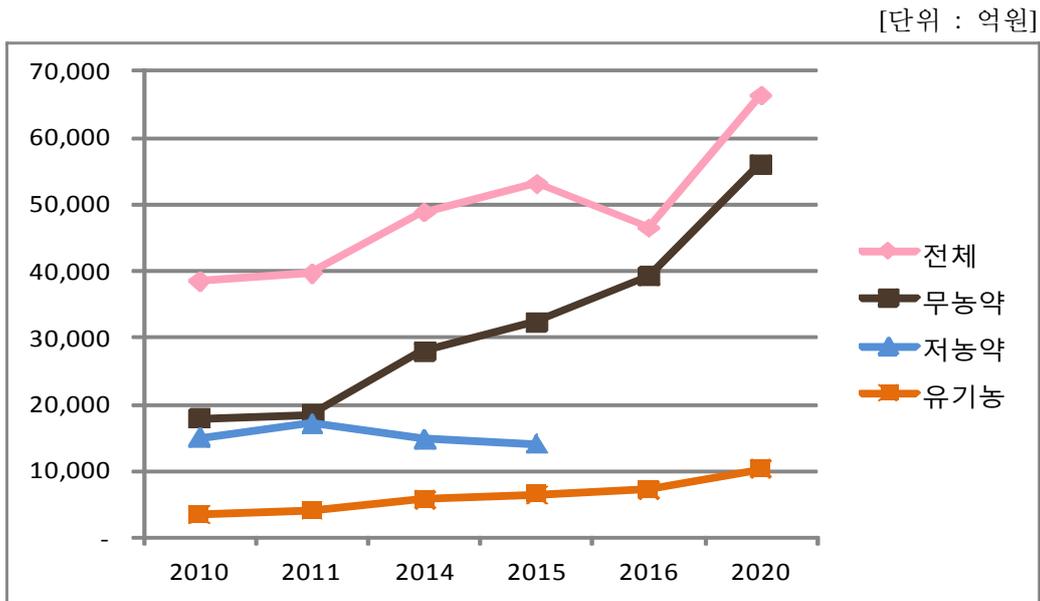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됨(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로 표기 가능)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하고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국내 친환경농산물시장은 38,506억원 규모이며, '20년에는 66,2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지난 '10년부터 중단되었고, '13년에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인증단계상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10년 3,521억원에 달하며, 오는 '20년에는 그 규모가 10,306억원으로 전체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1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 환경적 이슈,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등 소비층의 수요에 따라 '08년 이래로 연평균 26.3%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이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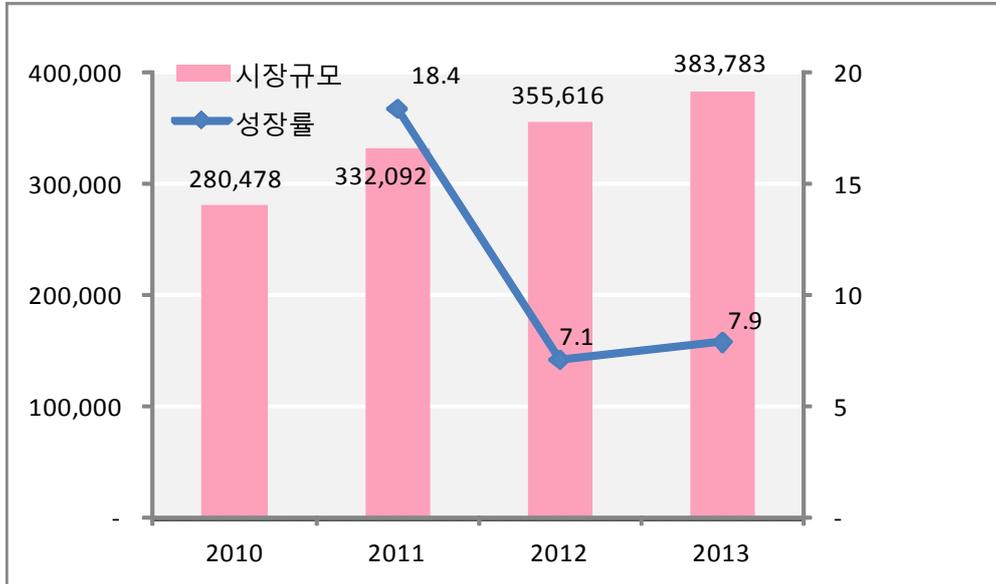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 및 전망



	2010	2011	2014	2015	2016	2020
전체	38,506	39,678	48,622	53,111	46,475	66,283
무농약	17,958	18,449	28,026	32,426	39,249	55,976
저농약	15,026	17,112	14,814	14,122	-	-
유기농	3,521	4,118	5,782	6,563	7,226	10,306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



- 국산원료를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은 폐쇄적인 유통 경로에 의한 고비용·고마진 구조로 유통되기 때문에 일반 가공식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2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됨
- 국내 유기식품 시장은 세계 유기식품 시장의 약 0.7% 수준에 그치며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원료 중에서 국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06	2007	2008	연평균 성장률
유기농산물	1,114 (44.0)	1,427 (45.4)	1,885 (46.6)	30.1
유기가공식품	1,419 (56.0)	1,719 (54.6)	2,158 (53.4)	23.3
계	2,533	3,146	4,043	26.3

* 소비자 가격기준, () 안은 구성비를 나타냄

2 국내 유기식품 현황

■ 국내 유기식품 인증제도

- 원료와 가공 과정을 검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사후 인증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있음
- 유기식품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실시
 -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농산물은 농관원이 인증한 것과 동일 취급

국내 유기인증 절차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 친환경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관리 :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인증품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 및 법적근거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3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 인증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함



- * 인증방법 : 인증적합 여부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 인증받은 농산물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
-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서, 인증품생산계획서, 영농관련자료,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인증수수료

-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기관 운영실비(인증기관 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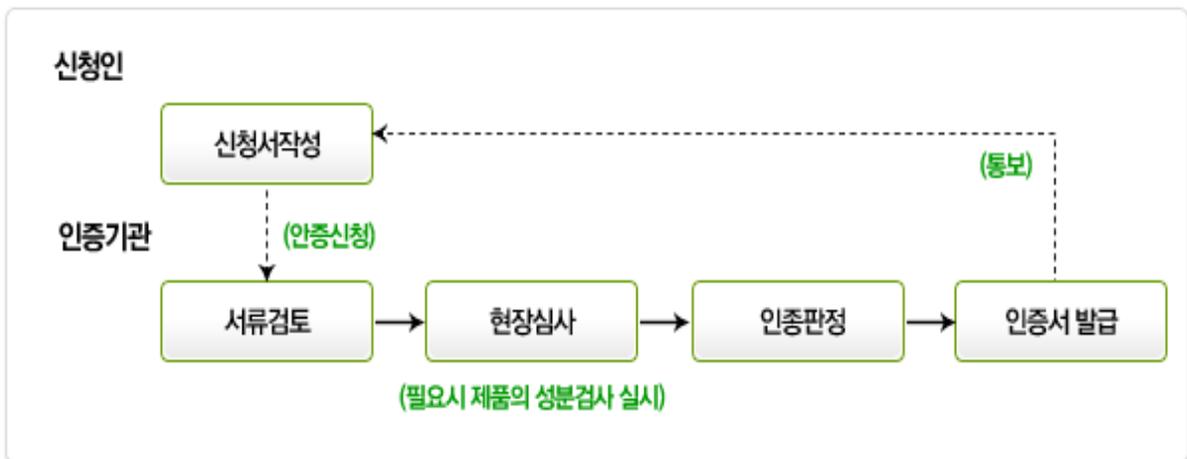
● 인증마크

	⇒	
	⇒	
	⇒	
	⇒	'10년 이후 인증 중단 '15년 인증제 폐지

- *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로고는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순화했음
- * 인증로고 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로고(기존 포장지) 사용은 2년간 ('13년말까지) 병행해서 사용됨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가공식품을 검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이상 사용한 식품
- 인증대상 사업자 범위
 -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도축 및 신선편이 가공, 육가공, 유가공, 도정 및 제분 업자 포함)
 -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 원료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국내에서 국산 또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을 소분 또는 재포장 하는 자
- 인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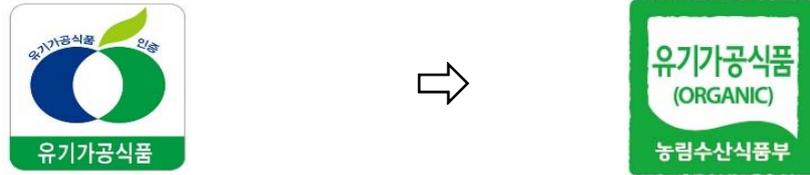


* 정기심사 : 인증 받은 사업자는 최초 인증을 받은 후 매년 1회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인증과 동일함.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정기심사 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와 첨부문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인증기준 및 법적근거

- 인증기관이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인증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인증 받은 사업자가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인증마크



- *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로고는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단순화했음
- * 인증로고 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로고(기존 포장지) 사용은 2년간('13년말까지) 병행해서 사용됨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 국내 유기 농산물 인증실적에서 '00~'10년 간 농가 수는 50.83%, 면적 59.14%, 출하량은 38.11% 증가로 높은 성장률 보임
- 유기 인증의 경우 민간기관이 주로 무농약·저농약 인증에 높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기 농산물에 대한 국가기관(농관원)의 실적 비중이 민간 기관보다 큼
- '11년 기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은 23,654건, 그 중 유기농산물 인증은 3,257건으로 전년대비 총 인증실적은 2.6% 감소하였으나 유기농산물 인증은 약 1% 증가
 - 친환경농산물의 총 인증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비중의 저농약농산물 인증면적 및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15년부터 저농약 인증 폐지('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은 중단된 상태) 라는 정책적 변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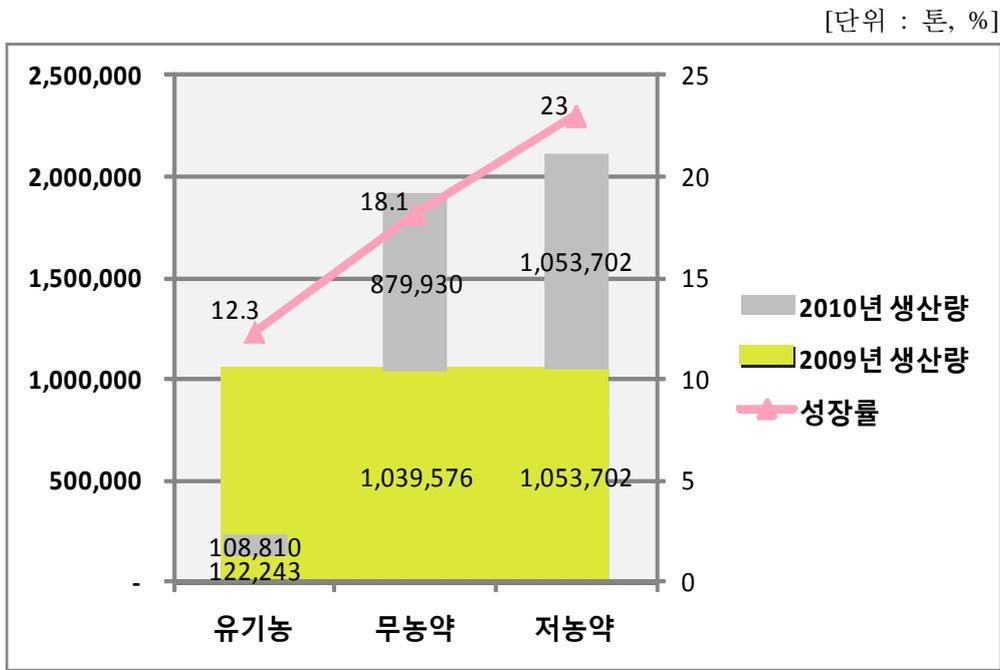
[단위 : 호, ha, 톤, %]

		2000	2008	2009	2010	2011
유기	농가수(호)	353	8,460	9,403	10,790	13,376
	면적(ha)	296	12,033	13,343	15,517	19,311
	출하량(톤)	6,538	114,649	108,810	122,243	123,314
무농약	농가수(호)	1,060	45,089	63,653	83,136	89,765
	면적(ha)	876	42,938	71,039	94,533	95,253
	출하량(톤)	15,694	554,592	879,930	1,039,576	979,791

		2000	2008	2009	2010	2011
저농약	농가수(호)	1,035	119,004	125,835	89,992	57,487
	면적(ha)	867	119,136	117,306	83,956	58,108
	출하량(톤)	13,174	1,519,070	1,369,034	1,053,702	749,136
계	농가수(호)	2,448	172,553	198,891	183,918	160,628
	면적(ha)	2,039	174,107	201,688	194,006	172,672
	출하량(톤)	35,406	2,188,311	2,357,774	2,215,521	1,852,241

*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농산물에 포함시켜 제시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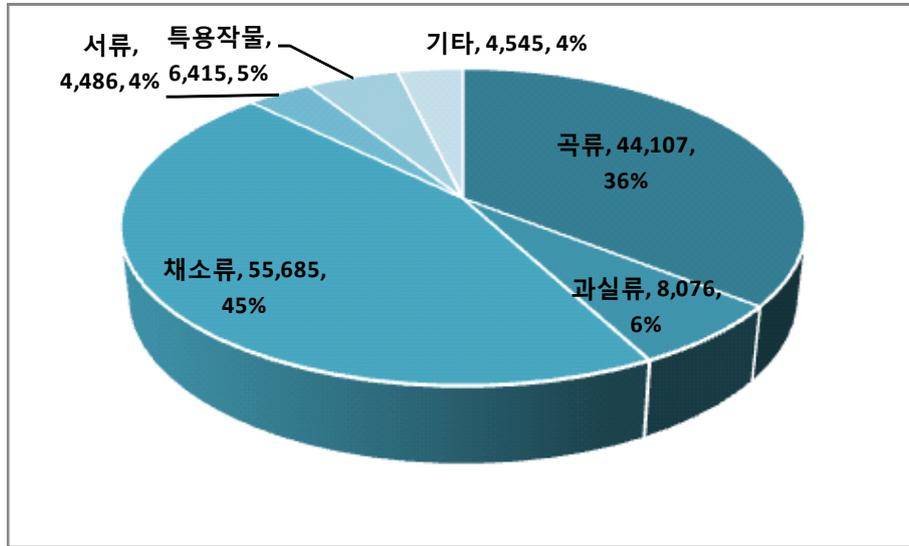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생산량 추이



- 친환경농산물 품목류별 출하량을 보면('11년 기준) 곡류 37만 1,055톤, 과실류 45만 7,794톤, 채소류 75만 3,524톤으로 채소류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유기농산물의 품목별 출하량을 보면('11년 기준) 곡류 4만 4,107톤, 과실류 8,076톤, 채소류 5만 5,685톤으로 채소류가 전체의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11년 품목류 유기농산물 출하량

[단위 : 톤, %]



'11년 품목류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단위 : 톤]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용작물	기타
유기	44,107	8,076	55,685	4,486	6,415	4,545
무농약	267,536	39,542	430,637	47,156	180,906	14,014
저농약	59,412	410,176	267,202	7,765	2,748	1,833
합계	371,055	457,794	753,524	59,407	190,069	20,39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 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과정에서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제 17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
- '12년 현재,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18지원)과 72개 민간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음
- '11년 민간기관의 인증실적은 전체 인증건수 2만 3,654건이며, 유기농산물 인증건수는 3,257건임

'11년 인증 유형별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

[단위 : 건, %]

		유기	무농약	저농약	전체
건수	전체(A)	3,257	13,694	6,703	23,654
	민간(B)	1,760	9,959	2,992	14,711
	비중(B/A)	54	73	45	6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1년 기준,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소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유기농산물 가격은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차가 상당한 편임
 - 대파 2.9배, 양파 2.3배, 쌀 1.9배, 오이 1.7배, 상추 1.5배, 토마토 1.4배 등으로 나타남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소매가격 비교

[단위 : 원/kg, 10개]

		쌀	상추	대파	양파	오이	토마토	감귤	평균
2011	유기(A)	4,178	12,306	7,534	3,707	11,587	6,587	-	-
	무농약(B)	3,116	11,642	5,913	2,673	10,341	5,956	3,693	-
	일반(C)	2,189	8,440	2,591	1,586	6,800	4,804	2,674	-
	A/C	1.9	1.5	2.9	2.3	1.7	1.4	-	1.9
	B/C	1.4	1.4	2.3	1.7	1.5	1.2	1.4	1.6
2006	무농약(D)	3,481	10,866	6,364	3,260	7,724	5,741	4,833	-
	일반(E)	2,128	8,560	2,522	1,724	5,717	4,175	2,669	-
	D/E	1.6	1.3	2.5	1.9	1.4	1.4	1.8	1.7

* 오이, 감귤은 10개당, 나머지 품목은 kg당 가격임

* 서울지역 평균가격을 이용하였으며, 일부자료 중 출하기간이 너무 짧은 자료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자료는 제외하였음

자료 : 농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

- 농경련(KERI)이 발표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실태'에 따르면 일반농산물 가격(1,000원 기준) 대비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가격 수준은 품목과 인증단계에 따라 다르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51~79% 수준임
- 그러나 소비자가 원하는 유기농산물 적정가격 프리미엄은 37~52% 수준임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구입가격 및 소비자 희망 적정가격

[단위 : 원]

구분	현재가격		적정가격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구입 경험자	곡류	1,783(178)	1,481(148)	1,517(152)	1,441(144)
	엽채류	1,591(159)	1,504(150)	1,372(137)	1,317(132)
	과채류	1,785(179)	1,507(151)	1,476(148)	1,416(142)
	과실류	1,506(151)	1,693(169)	1,497(150)	1,381(138)
평균	1,666(167)	1,546(155)	1,466(147)	1,388(139)	
비구입자	1,694(169)		1,395(140)		

* ()는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를 나타냄

*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향후 지불의사(일반가공식품 1,000원 기준)

* 구매 경험자 평균 1,508원, 구매 비경험자 1,404원(현재 시장의 평균 가격: 2,000원)

자료 : KERI, 2012

유기가공식품 인증현황

- 소비자의 소득 증가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유기가공식품 관련 제도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일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08년 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수입품 비중이 큰 편임
- '11년 말 기준 유기가공식품의 시장 규모는 2,8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며, 업계에서는 향후 3년 동안의 유기가공식품 성장률을 연평균 10%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지난 '04년 38건에서 '10년에는 258건으로 대폭 증가함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단위 : 건, 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건수	38	99	194	187	231	199	258
품목수	-	-	-	100	125	250	378
출하량	1,340	235	1,103	1,883	1,748	-	-

*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은 '09년부터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0년 말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의 품목별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기타식품류가 96개로 가장 많고, 다류 71개, 음료류 56개 등의 순
- 제품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기타식품류로 395개, 다류 346개, 음료류 141개, 장류 7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10년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인증실적

품목(대분류)	건수	제품수	품목(대분류)	건수	제품수
과자류	8	47	면류	6	14
빵 또는 떡류	7	17	다류	71	346
잼류	7	39	커피	10	20
설탕	12	24	음료류	56	141
포도당	1	1	특수용도식품	4	6
과당	3	5	장류	19	78
엿류	8	15	조미식품	16	22
당시럽류	4	10	김치류	8	24
올리고당류	2	4	절임식품	5	8
식육 또는 알가공품	1	3	주류	5	6
두부류 또는 묵류	9	13	기타식품류	96	395
식용유지류	20	52	-	-	-
계	-	-	-	378	1,290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유기식품 수입현황

- 유기식품의 수입량은 증가추세로 '05년 8,411톤에서 '10년 2만 5,473톤까지 증가
 - '09년은 2만 1,293톤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환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유기식품의 중량은 평균치이며, 금액은 '08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 '10년 기준 유기식품 수입건수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순이며, 중량은 브라질, 필리핀, 미국, 중국, 호주 순, 금액은 미국, 필리핀, 브라질, 호주, 터키 순임

유기식품 연도별 수입 현황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국가	국가 수	35	35	45	43	38
	주요 수입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브라질, 필리핀, 미국, 호주, 중국, 콜롬비아	미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수입건수		2,451	3,009	3,844	3,686	3,991
중량(kg)		14,635,488	23,867,595	25,350,022	21,293,130	25,473,180
금액(\$)		27,486,073	40,357,998	56,604,304	39,735,113	49,349,691

* 식품위생법 제 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5% 이상 함유돼 있어야 제품명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음. 따라서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은 제품명에 「유기」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수입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10]

3

해외 유기식품 현황

■ 미국 유기식품 현황

- USDA는 유기농식품생산법률(OFPA : Organic Foods Production Act)에 기반해 ‘국가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을 개발하여 '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유기농 상품에 대한 생산·관리·라벨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음
 - 미국은 소비자 단체가 유기농 제품 생산 기업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행하고 있으며 '09년 호라이즌 오가닉이 자사의 인기 두유 브랜드인 ‘실크(Silk)’를 유기농이 아닌 내추럴 성분으로 바꿔 판매한 것을 알고 소송제기
- 미국 유기농장의 전체 면적은 190만ha(약 1,900억㎡)로, 유기농장 면적상 호주,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임
- 미국 유기농무역협회(OTA : Organic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시장은 '90년 10억원 규모에서 '10년 300억원 규모로 성장해 시장 규모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함

- 미 유기농식품 시장은 전 세계 식품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 중
 - 최근 미국의 유기농식품시장은 유명 내셔널브랜드의 제품은 물론, 경제성을 갖춘 다양한 유기농 PB제품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음

미국 유기농 상품 매출 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기농 음료	668.3	716.1	759	676	668.9	692.8
유기농 식품 (신선식품 제외)	7,304.4	8,437.5	9,988.6	11,116.9	10,848.5	11,180.7
전체	7972.6	9153.7	10,747.6	11,792.8	11,517.5	11,873.5

자료 :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 현재 미국 내에서 유기농 상품 공급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과 월마트(Wal-Mart)이며 두 업체는 상반된 유기농 매장운영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 USDA가 인증한 미국 최초의 유기농 유통업체
 - * ‘내추럴·유기농 전문점’을 표방하며 다양한 내셔널 브랜드와 유기농 PB인 ‘365오가닉(365 Organic)’을 취급
 - * 과일·채소류를 포함한 신선식품 뿐 아니라 육류, 해조류, 와인 등 다양한 식품과 화장품, 의류 등 비식품도 판매 중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과 유기농 PB인 ‘365오가닉(365 Organic)’



- 월마트(Wal-Mart)
 - * '06년 매장 내 유기농 상품 비중을 2배로 늘리며 시장에 본격 진입, ‘평범한 미국인’을 타겟으로 하여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상품 매출을 증가시킴
 - * 불황기에 저가 판매를 고수하는 월마트의 정책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기농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수요가 일치했기 때문임

- IBIS월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기농 식품시장이 '11년부터 향후 5년간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식품시장의 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비만을 야기하는 합성보존료가 들어간 상품을 기피하기 때문임

■ 독일 유기식품 현황

- 독일의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5억 7천만 유로로 추정되며, 독일 식품시장의 3.6%를 차지하고 있음
- '00년대에 들어 독일 유기농 식품 시장은 고속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
 - '01년 전년대비 32%의 높은 성장을 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08년에도 전년대비 약 10%의 성장을 달성함
-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유기농을 의미하는 '비오(Bio)'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물, 소금, 이스트 등 몇몇 공인된 첨가물은 농산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독일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업을 통해 조달된 것이어야 하고, 유전자 재조합 원료 사용을 금지해야 함
- 독일도 한때는 유기농 인증마크가 혼재돼 사용되면서 일반식품과 구별하는데 불편을 겪기도 했음
- 그러나 2001년 9월 독일 정부는 새로운 인증마크인 '비오-지겔(Bio-Siegel)'을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일반식품과 유기농식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됨

비오-지겔(Bio-Siegel)로고와 인증제품



- 유럽에서 독일과 영국의 유기농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독일의 유기농 시장은 영국 매출액 규모의 두 배 이상임

- '10년 7월부터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유기농 인증도 통합 운영되고 있음
 - 통합 인증 운영 규정 대부분은 독일의 비오-지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음
- 독일은 유기농식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판매처도 다양함
 - 유기농 전문점, 중대형 할인점, 드럭스토어 등 유기농 판매채널이 다양해 유기농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음
- 2011년 6월 말 기준, 독일에는 3,905개의 제조사에서 출시한 6만 2,634개의 제품이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상태임

■ 각국별 유기인증제도 비교

국가	한국	IFOAM	Codex*	미국	EU	일본	호주
법적 근거	친환경농업 육성법(농업), 식품산업진흥법(가공)	IBS(기본규정) IAC(인정기준)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유통에 관한 지침	OFPA (유기식품생산법) NOP (국가유기식품 프로그램)	EEC N 834/2007 889/2008 회원국별 유기기준	JAS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유기 및 바이오-다이나믹 제품에 대한 국가규정
적용 범위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 및 가공품
주무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식품규격 위원회 (CAC)	농무부(USDA)	유럽의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부
인정 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IOAS		USDA-AMS		소비안전 기술센터	AQIS
인증 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IOAS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관	정부, 민간인증기관	주정부, 민간인증기관	EN45011 자격요건 기간으로 대부분 민간인증기관	민간 인증기관	민간 인증기관
표시	유기,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제품, 인증된 유기, 유기	유기, 전환기	100%유기, 유기, 유기성분으로 만든	유기	유기, 특별재배 농산물 (자발적 표시)	100%유기, 유기, 유기성분으로 만든
표시 사항	유기표시/마크, 인증번호/생산자 산지/무게	유기표시, 생산자명, 주소, 인증기관	유기표시 인증기관명칭 또는 코드번호	유기표시/ USDA마크, 원료함량, 인증사업자연 및 주소	유기표시/ 마크, 생산자명, 검사기관명, 검사기관 코드번호	유기표시/ JAS마크, 재배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등록인증 기관명	유기표시/마크, 인증사업자/ 주소/전화번호, 인증기관명/ 주소
인증 로고							

- * 국제 주요 유기식품 인증제도 및 미국과 일본 인증제도(부록)
-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FAO/WHO 합동식품규격사업단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 Organization)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에 해당되는 라틴어로서 Codex Alimentarius는 식품법령(기준)을 의미
 Codex에는 현재 규격(standard), 실행규범(code of practice), 지침(guideline) 및 기타 문서(MRLs, Miscellaneous) 등 317개의 국제기준이 제정·운영되고 있음

■ 각국의 위반 제재 조치

- 각국 별 위반자 제재조치 기준을 정해 엄격히 적용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에 비추어 가장 많은 벌금형으로 엄격한 제재기준을 갖고 있음
 - 한 국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일 본 :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만엔 이하의 벌금
 - 미 국 : 5년간 자격박탈 및 1만불 이하의 벌금
 - 캐나다 : 6개월 이하의 금고 및 5,000만불 이하의 벌금
 - 독일 : 인증취소 및 형사고발(유럽 - 유기표시 금지)

■ 해외 유기식품 우수사례

- 세이프웨이(Safeway)의 O 오가닉(O Organics)
 - 유기농 PB(Private Brand)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O 오가닉은 미국 유명 슈퍼마켓 중 하나인 세이프웨이(Safeway)가 '05년 말에 론칭한 유기농브랜드로, NB(National Brand)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임
 - * 론칭 첫 해 150개 아이템에서 1억 5천만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세이프웨이 매장 뿐 아니라 미국 전역과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로 성장함
 - O 오가닉은 저렴한 가격에 건강하고 안전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 브랜드로, USDA Organic standards(화학농약, 유전자조작, 성장호르몬,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음)를 준수함

세이프웨이(Safeway)의 O' 오가닉(O' Organics) 인증로고와 제품



4

유기인증식품 해외진출 과정 및 애로사항

국제 유기인증 과정 및 업체별 애로사항

- 국내 유기식품 업체의 국제 유기인증 취득은 주로 대형 컨설팅 기관에서 이루어짐
- 대형 컨설팅 기관 및 국제 인증 보유 국내 유기식품 업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증 취득 과정 및 애로사항 문의

국제 유기인증 과정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심사

- 작성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예상 비용 산출 및 현장검사 일정 계획

2. 현장 검사

- 평균검사 소요시간 3시간(추가 소요시간 2시간)

3. 인증위원회 심사

- 신청서류 및 현장검사 보고서 기반

4. 비용 산출

- 기본 기준 요소(인력 및 작업량)
- * 업체규모, 복잡성, 거리, 취급원료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인증 필요

5. 사후 평가

- 사업의 복잡성, 품목 특성에 의해 평가가 어려운 경우 인증 완료 후 평가
- * 추후 발생 비용은 다음 해 갱신 시 감안

* 모든 심사는 이전 인증 결과와 상관없이 매년 동일하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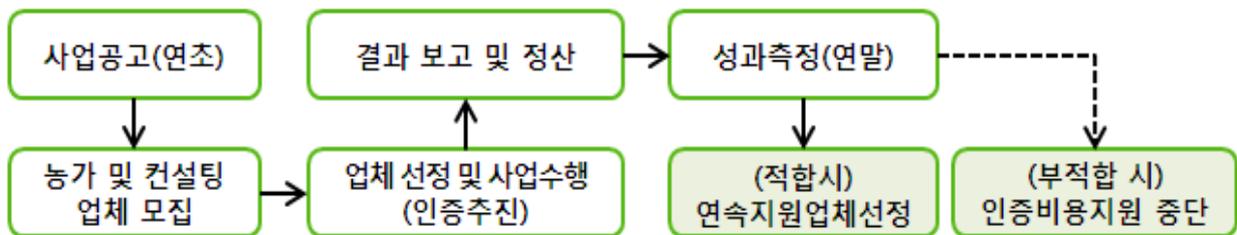
업체별 애로사항

업 체	국제 유기인증 컨설팅 기관	국제 유기인증 보유 업체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 시스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유기인증의 경우 컨설팅 기관에 각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 - 품질 관리 시스템은 곧 각 농가별 내부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을 갖추는 등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 - 국내 업체 다수가 국제유기인증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적 관리를 컨설팅 업체에서 총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유기인증 제도 차이로 인한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기인증은 1차 원료 인증을 사전에 받은 업체의 경우 2차 가공식품에 한해서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반면 국제 유기인증은 원료 생산농가에 대한 인증검사부터 새로이 다시 진행 * 국제 유기인증 취득 시 시간 및 비용 부담이 크며 매년 갱신 때마다 원료 수급문제 발생 - 국제 유기인증은 인증 업무 책임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 과정이나 정보를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업체 이해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농가 및 수출업체에서 국제 유기인증에 대한 필요성 인지 부족 -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 가능한 국내유통 채널이 많고 국제 유기인증 취득을 위해 시간이나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국제 유기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거의 없어 인증 취득 기피 ● 국제 유기인증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 및 이해 습득의 어려움

■ 국제 유기인증 관련 지원 사업 확대

- 국제 유기인증 비용 지원 사업 : 국제 유기 인증을 획득한 국내 업체 중 생산 실적, 수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국제 유기인증 전문 인력 교육 사업 : 국제 유기 인증제도 획득을 원하는 농가 대상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 사항 교육 (대행 컨설팅 업체)

국제 유기인증 비용 지원 사업 절차(예)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기인증 관련 지원 사업(부록)

■ 국내 유기식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인정

- 국내 유기식품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판매 가능한 동등성((Equivalency)) 절차를 추진, 체결함으로써 기본적인 무역장벽 해소 및 비용 절감
 - 일본 JAS, 미국 NOP와 같이 해외 통용 가능한 유기인증제도 생성

■ 유기식품의 다양화

- 과일·채소류를 포함한 신선식품 뿐 아니라 육류, 해조류, 와인 등 다양한 유기식품을 판매하는 미국·유럽 등 주류시장과 달리 국내 유기식품은 그 종류가 제한적임
- 따라서 다양한 유기식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있으나 유기가공식품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류(유아식/ 분유, 쌀가공식품 등)를 중심으로 아이템 개발을 하는 것이 유리함

■ 유기농식품 브랜드 개발 및 전략 상품 선정

-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유기농식품 브랜드를 개발 및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미국의 Earthbound farm, 이탈리아의 Alce Nero)
- 기존 수출품목(신고배, 파프리카 등)의 유기농 제품을 해외 주류 시장 내 유기농 전문 슈퍼마켓 입점 집중 추진

■ 유통망 개척 및 현 재원 사업 개선

- 유기식품 특성에 맞는 직거래, 통신판매 및 세트판매 등 다양한 유통 방식 도입
 - 유기농산물 상당량이 개별 단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은 고비용, 고가격 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함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업체 생산 및 유통의 규모화와 효율화가 필요
 - *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대단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 유기농식품 클러스터(또는 유기농 푸드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유기농 전문 마켓 유통 구조 파악

■ 시장 세분화

- 불경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 PB식품을 개발하는 한편, 부가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유기농 식품 개발이 필요함
 -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높은 가격은 소비자가 유기식품을 선택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 미국, 유럽 등 서구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기농 PB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이 수출 위주의 유기농산물이나 유기식품(녹색식품) 육성전략을 펴고 있어 국내 유기식품 산업 발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다각적인 마케팅 톨 활용

- 유기식품 전문 전시회 참가
 - 유기식품 관련 전시회를 통해 정보 획득 및 트렌드 파악
 -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주류시장 진입의 발판으로 활용

주요 유기식품 전시회

전시회	개최기간	특징
IFOAM 세계유기농대회	2014.10.0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는 학술대회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분야별·주제별 토론회, 박람회, 부대 행사 등 개최 유기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행사로 '11년 국내(남양주)에서도 개최된 바 있음 제 18차 개최지는 터키 이스탄불로 퓌투피키루라 컨벤션센터에서 대회가 개최될 예정
Natural Product Expo West	2013.03.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ural Product Expo(자연건강박람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개최(West-서부는 상반기에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박람회)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최대박람회 주로 유기농 식품과 건강제품, 유기농 애완동물 제품을 전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Natural Product Expo East	2013.09.2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에 East(동부)에서 개최되는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제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의 사전 프로그램인 학술대회서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녹차 브랜드 '오설록'이 '유기차(茶)부문'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음
- * 제주에 위치한 설록 다원에서 유기농 재배 시스템 소개 및 유기농 투어 진행
- * 설록 다원 서광은 천혜의 제주 환경과 30년 녹차 재배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10년 유기농 인증인 IFORM(국제유기농협회 인증)과 USDA-NOP(미농무성 국가 유기 인증)을 받음

오설록 제품 친환경 인증서



자료 : 오설록 홈페이지

- Organic Processing, Supermarket News 등 유기농 관련 잡지에 광고
- 한류문화를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 최근 가수 싸이의 전세계적인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사들이 현지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음
 - 따라서 한류문화를 이용한 한국 유기식품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됨

■ 유기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음
 - 농경련에 따르면,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기식품 소비를 늘리는 성향이 있음
 - 미국의 소비자 단체 등이 철저한 감시를 시행하는 등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철저한 인증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

인 증 제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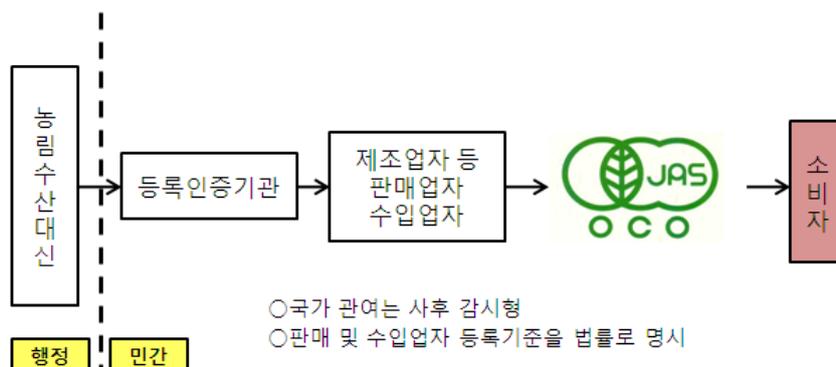
1

일본 유기 인증제도

● JAS인증제도

- 유기농산물의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표시제를 개선하고자 '91년부터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법 제정

그림 2. 일본 유기 인증 JAS 인증 구조



● 인증 절차

- 신청서 제출
 - * 기재사항 : 품목 종류와 업종, 포장 및 시설규모, 개수, 농산물의 재배, 계획, 신청자 성명 또는 법인명, 담당자 연락처
 - * 신청서는 민간등록인증기관에 제출하며 국가는 사후 감시에만 관여
- 사전검사 (서류심사)
 - *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성이 정하는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사전 검사 실시 (서류 미비 시 별도 제출 요구)
 - * 사전검사가 완료되면 현장 검사 계획서 제출
- 현장검사
 - * 인증기관의 인증검사원이 포장 또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검사 실시
 - *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 후 확인하지만 시일이 필요한 시정 조치의 경우 현장 검사 중단 (시정조치 완료된 시점에서 재검사)
- 판정위원회 개최
 - * 사전 및 현장검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판정위원회가 개최되며 결과가 인증에 적합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발행
 - * 인증서는 인증조건이 충족되어지는 한 유효함

● 사후 관리 및 인증 취소

- 인증서를 발행한 민간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업자에 의한 인증실적 및 표시 실적에 대해서 농림수산대신에 보고
- 인증 받은 업체는 지정된 장부 등을 기재하고 그 기록과 JAS 마크 부착내역을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시
- 인증 이후 최대 1년에 1회 혹은 인증기관 필요시 감사 실시
- JAS법 및 관련 법규(일본 농림 규격 등)를 위반할 경우 인증 취소

● 인증 수수료

- 유기JAS 인증 신청 수수료 1,200~2,000만원 (컨설팅 용역비 포함)
- 인증 후 감사 및 인증 갱신 비용 연간 약 200~300만원
- 판매 실적에 따라 로열티 추가 * (예) 방울토마토 1박스(3Kg)당 10~20원)

2

미국 유기 인증제도

● NOP 인증제도

- 유기농식품이 일관된 국가 유기농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및 인증됨을 소비자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 1990년 미 유기식품 생산법과 2000년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 제정

* USDA-NOP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Organic Program)

● 인증 절차 * 연간 판매량이 5천 달러 미만인 업체는 인증 면제

- USDA 지정 인증기관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미국 유기농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 절차에는 재배·포장 및 가공 시설의 조사, 상세영농관련 자료 관리, 정기적 토양 및 용수 검사가 포함

● 신청서 제출

- 기재사항 : 사업장 유형, 3년간 재배·포장에 사용한 물질 내역, 재배 유기농 제품 종류, 유기농 사업 계획 (영농 관행 및 사용 물질 등 기술)

● 현장 조사

-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이 유기농 제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활용되는 관행을 관찰하기 위해 신청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 인증기관 심사
 - 서류와 현장 조사 보고서 검토 후 관련 표준 및 요건 충족 완료 시 인증 및 인증서 발급
- 사후 관리
 -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 받은 사업장에 대해 매년 조사가 실시, 조사 실시에 앞서 갱신된 정보를 매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특정 사업장의 규정 준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인증기관에 통보
- 인증 수수료
 - 각 인증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나 일반적인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 * 기본수수료 : 1건당 175불
 - * 연간 수수료 : 매출액의 0.5% - 0.1%(연간 최대 15,000불 이내)
 - * 조사관 출장비 : 검사비용의 75% 수준 (검사비용: 시간당 20 - 30불 수준)

3

IFOAM 국제인증제도

- IFOAM 국제인증제도
 - 세계유기농연맹 인증기준에 의한 유기인증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권위있는 인증마크
 - *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1972년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제 비영리기관으로,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농법을 연구, 유기농 검증 표준을 제시함
미국 USDA, 호주 OFC, BFA, OHGC, NASAA, 뉴질랜드의 NZBPCC, 일본의 JAS 등이 IFOAM의 회원이며, IFOAM은 이런 단체들을 회원으로 관리 중
 - IFOAM(국제유기농연맹)은 직접 인증업무를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제시, 인증기관 인정 및 감독 등 전체조정기관으로서 활동함
 - * '12년 9월 기준, IOAS(IFOAM 국제인증 승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인증기관은 40여개, 이 중 국내 기관은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유농인 등 3개 업체가 있음
- IFOAM 국제인증 인증효과
 - 인증기관 간에 다국적 동등성 협약을 맺어 서로 간에 인증을 인정하므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기식품 인증 효과를 갖고 있음

- 따라서 IFOAM국제인증을 받은 인증자는 유기 인증제도가 없거나 IFOAM유기 인증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많은 해외 국가로 유기제품을 수출(판매)할 수 있음

IFOAM국제인증 인증범위 및 신청요건

인증범위	신청요건
유기농산물 ▶야생식물 및 특용작물 (하우스, 싹채소, 버섯류) 포함	글로벌유농인 국제인증기준(GIS)에 따라 재배하며, 수확 전 마지막 금지물질 사용일부터 36개월 또는 최소 전환기간 동안 농작물이나 토양에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농장 및 작물에 대한 인증 *최소 전환기간:단년생(작기시작 전 12개월), 다년생(수확 전 18개월), 목초지(수확 전 최소 12개월)
전환중	유기로의 전환기간 중 글로벌유농인 국제인증기준(GIS)에 따라 재배하며 금지물질 미사용 *인증표시는 불가능, 문구사용은 가능
유기축산물	글로벌유농인 국제인증기준(GIS)에 따라 사육하며, 사육축종 및 두수에 비례하는 충분한 사육공간 및 사료포를 확보한 가축사육장 및 그 사육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인증, 전환기간 충족(한육우 12개월, 젖소 90일, 산란계 42일), 100%유기사료급여
가공 및 취급	글로벌유농인 국제인증기준(GIS)에 따라 가공/취급하며 생산 전 과정에서 유기완전성 유지(비유기와의 구분관리 철저)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 이력 추적 감사기능, 유기원으로 95%이상(물, 소금 제외), 사용허용물질목록 상의 첨가제, 보조제 사용
수산물	글로벌유농인 국제인증기준(GIS)에 따라 양식(관리)되며 일년 또는 일생주기 동안 양식 단위에 금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 민물, 기수,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양식 생물(동/식물)에 대한 인증(단, 개방채취 지역 내에 있는 야생의 정착성생물은 야생식물로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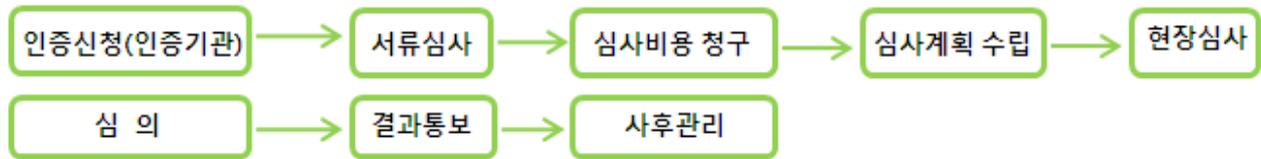
* IFOAM국제인증 인증범위 및 신청요건은 각 인증기관별로 일부 상이함
자료 : 글로벌유농인

● IFOAM 국제인증 국내인증 기관

- 글로벌 유농인 (대표번호 : 053-326-9895)
- 돌나라 유기인증 코리아 (대표번호 : 033-732-4234)
- 전남대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대표번호 : 062-530-2034)

● IFOAM 국제인증 인증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함



● IFOAM 국제인증 신청서류

- 계약서, 신청서, 유기영농계획서, 경영일지, 농장(축사 및 시설)배치도 등 인증 기준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

●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은 1년이며, 인증 받은 사업장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 조사 실시에 앞서 갱신된 정보를 매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인증수수료

- 각 인증기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나 일반적인 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 * 기본수수료 : 1건당 경종 및 축산 250~270\$/ 취급 및 가공 400~450\$ (심사원 출장비 및 인증 심사비는 거리 및 소요시간에 따라 별도 청구)
 - * 연간 수수료 : 전년도 인증품 총 매출액(생산계획서 상에 기재된 생산량)의 0.2~0.5%
 - * 인증 후 감사 및 인증갱신 수수료 : 갱신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비슷한 수준 대략적인 비용은 경종 및 축산 150\$/ 취급 및 가공 200\$(갱신수수료)
인증 후 감사는 자체 비공식심사를 통해 진행(예 : 인증업체 전체의 약 5%수준) 하며 비용은 기본 및 연간수수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기인증 관련 지원사업

*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사업 -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및 국내외 인증 지원

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지원 대상업체 모집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체로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자
-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11개 업체, 업체별 최대 400만원 한도

(2)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회사 소개서
-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유기가공 및 유기원료 사용계획서, 인증추진 대표 상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및 포장지(1종), '11년도 재무제표

(3) 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3년 1분기이내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로서
- * '14년 1월부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 우선순위 기준
 - ① 유기가공식품을제조.가공하는업체로서 인증 받고자 하는 대표 상품의 유기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 품목제조보고서 및 상품의 표시사항을 검토하여 유기원료 사용량이 높은 업체 우선 선정
 - 사용량이 동일한 경우 주원료의 사용비율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
 - 주원료 사용량이 동일한 경우 업력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선정
 - ② 과거생산실적은없으나유기가공식품을생산및인증을준비하는업체로서 인증을 준비 하는 식품의 유기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
 - ▶ 품목제조보고서와 유기 가공 및 유기원료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유기원료 비율이 높은 순서로 선정

(4) 컨설팅사배정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 풀에서 지원업체가 희망 컨설팅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택

나. 해외 유기식품 인증지원 대상업체 모집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중 해외수출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2012년도 해외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
- * 인증지원분야 : EU(유럽연합국가), NOP(미국), JAS(일본), COFCC(중국) 등
- * '12년도 해외 유기식품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함
- 컨설팅 분야 : 해외 유기가공식품 인증 신청 및 획득에 필요한 기본사항

- 지원내용 :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4개 업체, 업체별 최대 300만원 한도
- * 공고일 이전 당해연도 심사하여 인증받은 업체도 지원

(2) 제출서류

- 해외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국내 유기가공인증서,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3) 지원대상자선정기준

- 신청업체 접수 후 경합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업체 선정

< 우선순위기준 >

- ① 해외유기가공식품 2012년 신규 인증 획득 및 계획 업체
- ② 해외유기가공식품 기존인증업체로서 2012년 재심사를 통한 인증연장업체
- ③ 유기가공식품 수출실적이 많은 사업자(직전년도)
- ④ EEC 834/2007, NOP, JAS, COFCC 동시 인증 추진업체
- ⑤ 국내산 유기원료 구매실적이 많은 사업자
- ⑥ 해당 업종 경력이 오래된 사업자

다. 공통사항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2. 11. 22(목) 18:00시까지
 -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수시모집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농수산물식품기업지원센터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2) 문의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컨설팅팀 유기컨설팅담당

- 전화 및 이메일 : 02-6300-1734, k-food@at.or.kr

* 본 내용은 '12년도 2차 모집 공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 제도는 시행년도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